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1430
----------	-------

제안연월일 : 2026. 9.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229	김남희의원	2026. 7. 29.	2026. 9. 11.
	2221229	서영석의원	2026. 9. 9.	2026. 9. 11.

나. 위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9. 15.)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6. 9. 17.)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9. 17.) 비용
추계 생략 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노인학대관련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소송 절차가 개편됨에 따라, 학대받은 노인에 대한 보조인의 선임 및 동석과 관련된 현행 규정을 개편된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보조인 관련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39조의8제3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노인을 조사하는”을 “노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노인학대관련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 • ② (생 략) ③ <u>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u> <u>조사하는</u> 경우에도 제1항 및 제 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u>제8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u> <u>사법경찰관은 노인학대관련범</u> <u>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u> <u>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u>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검사 또는 수사기관---</u> <u>노인</u> <u>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u> <u>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u> <u>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u> <u>-----.</u>